

#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888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9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1. 30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4. 12. 10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기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액 : 28,238천원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
- 기금의 용도
  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  -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 -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 -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,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관리·운용하도록

되어있고, 지방자치법 제35조,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200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,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30,68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, 음식문화 개선 지원,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
- 본 계획안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?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 참석수당 50,000원을 70,000원으로 하여야 맞지 않는가?
- 답 :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금지출계획 산출내역에 일당 50,000원을 70,000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.
- 문 : 좋은식단 관련 책자 제작으로 인한 홍보효과 보다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요식업 관계자 이외 여성단체협의회, 환경단체, 어머니모임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선정하고 인원과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?
- 답 :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원확보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